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해 양 치 유 자 원 의 관 리 및 활 용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,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

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,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입법예고 예정
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창업 지원 등)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
1.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
2.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4. 평가 절차 및 방법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창업 동기 및 필요성
2.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

3. 창의성 및 시장성

4. 해양수산업 기여정도 및 부가가치 창출가능성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창업 지원 등)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1.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2.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4. 평가 절차 및 방법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u><신 설></u>	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1. 창업 동기 및 필요성 2.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 3. 창의성 및 시장성 4. 해양수산업 기여정도 및 부가가치 창출가능성
<u><신 설></u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 신청 및 심

	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53